

제352회 정례회
2016. 12. 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2일
-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정교부금의 산정·배분방법 변경(제6조)
 - 시군의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율 100분의 30 → 100분의 20
 - 재정력지수 기준 배분율 100분의 20 → 100분의 30

5. 검토의견

- 시·군 조정교부금은 시·도 관할 시·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기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규정에 따른 경우,
 -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 대비 해당 시·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

배분하고,

-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(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)가 1 미만인 시·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·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토록 하여,
- 오히려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·군에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해옴.
- 이에,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보다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6조제3항이 개정(2016. 8. 29.)되었고, 2017. 1. 1. 부터 시행될 것임.

※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개정 내용

기 존	개 정 (시행 2017. 1. 1)
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~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·군의 광역시세·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,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·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·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.	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~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·군의 광역시세·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,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·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·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상위법령인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

배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,

- 개정 내용은, 안 제6조 제1항에서
 -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른 시·군 배분율을 기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,
 - 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율을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참고자료> 2016년 시·군 조정교부금 내용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6년 지방세 총재원			2016년 조정교부금 재원		일반조정교부금 (C×90%)	특별조정교부금 (C×10%)
	소계 (A)	도세	지방소비세	배율 (B)	산출액 (C=A×B)		
계	6,915	4,730	2,185		2,610	2,349	261
청 주 시	3,727	2,550	1,177	47%	1,751	1,576	인구수 50% 도세 징수실적 30% 재정력지수 20%
충 주 시	975	667	308	27%	263	237	
제 천 시	484	331	153	27%	130	117	
보 은 군	118	80	37	27%	31	29	
옥 천 군	207	142	66	27%	56	50	
영 동 군	152	104	48	27%	41	37	
증 평 군	104	71	33	27%	28	25	
진 천 군	366	251	116	27%	99	89	
괴 산 군	173	118	55	27%	47	42	
음 성 군	491	336	155	27%	132	119	
단 양 군	118	80	37	27%	32	28	